

정비사업의 입찰참가 제한기간 및 입찰참가 제한을 갈음하는 과징금의 부과기준
(제89조의3제1항 및 제6항 관련)

1. 일반기준

시·도지사는 건설업자 또는 등록사업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법 제113조의3제5항에 따른 입찰참가 제한을 갈음하는 과징금 금액을 제2호에 따른 과징금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줄여서 부과할 수 있다.

- 가. 건설업자 또는 등록사업자가 같은 위반행위로 법 제113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정비사업에 대한 시공자 선정이 취소된 경우
- 나. 건설업자 또는 등록사업자가 같은 위반행위로 법 제113조의2제1항 전단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받은 경우

2. 개별기준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입찰참가 제한기간	입찰참가 제한을 갈음하는 과징금 금액
가. 건설업자 또는 등록사업자가 법 제132조제1항을 위반한 경우	법 제113조의3 제1항 및 제5항		
1) 건설업자 또는 등록사업자가 법 제132조제1항을 위반하여 부정제공한 가액의 합이 3천만원 이상인 경우		2년	공사비의 100분의 20
2) 건설업자 또는 등록사업자가 법 제132조제1항을 위반하여 부정제공한 가액의 합이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미만인 경우		2년	공사비의 100분의 15
3) 건설업자 또는 등록사업자가 법 제132조제1항을 위반하여 부정제공한 가액의 합이 500만원 이상 1천만원 미만인 경우		1년	공사비의 100분의 10
4) 건설업자 또는 등록사업자가 법 제132조제1항을		1년	공사비의 100분의 5

위반하여 부정제공한 가액의 합이 500만원 미만인 경우				
나. 건설업자 또는 등록사업자가 법 제132조제2항을 위반한 경우	법 제113조의3 제1항 및 제5항			
1) 건설업자 또는 등록사업자가 법 제132조제2항을 위반하여 시공외제안한 가액의 합이 3천만원 이상인 경우		2년	공사비의 100분의 20	
2) 건설업자 또는 등록사업자가 법 제132조제2항을 위반하여 시공외제안한 가액의 합이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미만인 경우		2년	공사비의 100분의 15	
3) 건설업자 또는 등록사업자가 법 제132조제2항을 위반하여 시공외제안한 가액의 합이 500만원 이상 1천만원 미만인 경우		1년	공사비의 100분의 10	
4) 건설업자 또는 등록사업자가 법 제132조제2항을 위반하여 시공외제안한 가액의 합이 500만원 미만인 경우		1년	공사비의 100분의 5	
다. 건설업자 또는 등록사업자가 법 제132조의2를 위반하여 관리·감독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로서 용역업체의 임직원이 법 제132조제1항을 위반한 경우	법 제113조의3 제1항 및 제5항			
1) 용역업체의 임직원이 법 제132조제1항을 위반하여 부정제공한 가액의 합이 3천만원 이상인 경우		2년	공사비의 100분의 20	
2) 용역업체의 임직원이 법 제132조제1항을 위반하여		2년	공사비의 100분의 15	

부정제공한 가액의 합이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미만인 경우			
3) 용역업체의 임직원이 법제132조제1항을 위반하여 부정제공한 가액의 합이 500만원 이상 1천만원 미만인 경우	1년	공사비의 100분의 10	
4) 용역업체의 임직원이 법제132조제1항을 위반하여 부정제공한 가액의 합이 500만원 미만인 경우	1년	공사비의 100분의 5	